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63

발의연월일: 2020. 9. 7.

발 의 자: 한병도 · 김승원 · 김민철

이형석 · 오영환 · 이상헌

권칠승·정일영·허 영

박재호 • 박상혁 • 신영대

최종윤 의원(13인)

제안이유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법령과 53개의 관련 고시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유연한 대처와 소방정책의 품질향상을 위해 각종 소방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119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적용으로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 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나.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19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 다. 소방정책 수립과 시행에는 화재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에도 화재 등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통계 작성의 근거가 없어 화재통계의 작성과 범위에 관하여 법률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 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등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4조의3(119데이터분석센터의 구축·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 장은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 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 관련 데이 터(이하 "소방데이터"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방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 1.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 건축물 현황에 관한 데이터
 - 2.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데이터
 - 3. 소방특별조사 등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데이터
 - 4. 소방활동자료조사 등 대응활동에 관한 데이터

- 5. 화재 · 구조 · 구급활동에 관한 데이터
- 6. 화재조사에 관한 데이터
- 7. 화재경계지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에 관한 데이터
- 8. 피난약자 등 화재안전관리취약자에 관한 데이터
- 9.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수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이터
- ②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데이터분석센터(이하 "119데이터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 ③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데이터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방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11 9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4조의4(데이터의 활용)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정책의 수립 및 의사결정 등에 소방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119데이터분석센터가 운영하는 소방데이터를 소방관서 및 소방 관련 단체 등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

리를 증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소방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하는 소방관서 및 소방 관련 단체 또는 소방데이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소방데이터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른 소방데이터의 공유대상, 데이터의 범위 및 공동 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화재 등 통계의 작성) ① 소방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 계획의 수립 등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 구조·구급 등 화 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
		치・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
		<u>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u>
		및 위험물 등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조에서 "소방
		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민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4조의3(119데이터분석센터의
		<u>구축·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u>
		소방본부장은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국
		<u>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u>
		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
		방 관련 데이터(이하 "소방데이
		터"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소방업무에 활
		용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 등 건축물 현황에 관한
		데이터

현 행	개 정 안
	2.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데이터
	3. 소방특별조사 등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데이터
	4. 소방활동자료조사 등 대응활
	동에 관한 데이터
	5. 화재・구조・구급활동에 관
	<u>한 데이터</u>
	6. 화재조사에 관한 데이터
	7. 화재경계지구 현황 및 안전
	관리실태에 관한 데이터
	8. 피난약자 등 화재안전관리취
	약자에 관한 데이터
	9.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소방청
	<u>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수집·</u>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이터
	②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데이터를 효
	율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데이터분석센터
	(이하 "119데이터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 소방청장은 또는 소방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소방데이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u>한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방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119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u>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제4조의4(데이터의 활용) ① 소방
		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정
		책 수립 및 의사결정 등에 소방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u>야 한다.</u>
		②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119데이터분석센터가 운영하는
		소방데이터를 소방관서 또는 소
		방 관련 단체 등에서 화재의 예
		방 및 안전관리를 증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데이터의 수집 · 관리 ·

현 행	개 정 안
	활용을 하는 소방관서 및 소방
	관련 단체 또는 소방데이터 관
	련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
	무상 알게 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
	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u>다.</u>
	④ 제2항에 따른 소방데이터의
	공유대상, 데이터의 범위, 공동
	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6조의2(화재 등 통계의 작성)
	① 소방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
	른 종합계획의 수립 등 소방정
	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 구
	조ㆍ구급 등 화재의 예방 및 안
	전관리에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
	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

현 행	개 정 안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2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
	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
	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